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54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11월 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감귤류(柑橘類)
- 2 발 역(發 驛) 부산(釜山)
- 3 착 역(著 驛) 조선총독부(朝鮮總督府) 철도국선(鐵道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 각(各) 역(驛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경성(京城), 인천(仁川), 단동[安東]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, 진남포(鎭南浦), 목포(木布), 군산(群山), 마산(馬山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성진(城津) 착(著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35% 할인(割) 청진(淸津), 회령(會寧), 상삼봉(上三奉: 경유[經由]를 포함[包含]함) 및 두먼[圖們: 경유(經由)를 포함(包含)함] 착(著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線鐵道管理局線) 통산(通算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3할(割) 5푼(分) 감(減) 단동경유[安東經由] 연대선(連帶線) 착(著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내(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4할(割) 감(減) 기타(其他) 착(著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내(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1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4(昭和 9)년 11월 6일부터 1935(昭和 10)년 7월 31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해 6천2백톤(六千二百噸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자(者)에 대(對)해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할려(割戻)하는 것으로 함. 나 특별톤수(特別噸數)에 의(依)해 출화(出貨)한 수량(數量)은 전호(前號)의 수량(數量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을 득(得)함.